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88. 3. 11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12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7년 12월 26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98. 3.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이종현)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부설주차장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 건설을 촉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부설주차장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 15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로 확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2항1호에 당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0m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구조례 개정 당시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이내로 함으로써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지를 선정하기가 어려워 개정이 타당하나 본 조례의 개정이 '97년 4월 9일 의결되었는 바, 조례공포이후 1년도 안된 상태에서의 개정은 심의에 허술함이 있다고 사료됨.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영등포구 지역내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요건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정함.

나. 수정주요골자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확대 (안 제19조)

5.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
----------	-----

제출년월일 : 1997.12.2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부설주차장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 건설을 촉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부설주차장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 15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로 확대.
(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2항
- 나. 합의사항 : 없음
-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라. 조례개정(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5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u>150m</u> 이내 또는 도보거리 <u>3000m</u> 이내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u>300m</u> 이내 또는 도보거리 <u>600m</u> 이내로 한다.